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내

1. 관련근거

-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4호 (2016.2.23.)
-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7호 (2016.2.23.)
- 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8호 (2016.2.23.)
- 라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9호 (2016.2.23.)
- 마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30호 (2016.2.24.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는 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33호, 2015. 7.23),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9호, 2016.1.20.),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」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2호, 2016. 2. 4.),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42호, 2015. 12. 29.) 및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1호, 2016.1.29.)」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.

붙임 : 고시 제2016-24호, 고시 제2016-27호, 고시 제2016-28호, 고시 제2016-29호, 고시 제2016-30호 개정안 각 1부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(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94 ( 2016.02.24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ldm@kha.or.kr](mailto:ldm@kha.or.kr)